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I 사업개요

- 사업명 :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기후위기 대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라 가격 상승 폭이 큰 필수기자재의 구입 부담을 완화
 - 농업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조성
- 근거법령 :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필수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필수기자재 가격이 지정업체 판매가격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직전 3년의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에서 5퍼센트 이상 급등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II 지원계획

- 사업비 : 50백만원 (군비)
- 사업내용 : 농가당 필수기자재 인상분(구매금액 10%)의 반값(50%) 지원
- 사업량 : 100농가×농가당 최대 1,000천원
- 신청기간 : 2026. 9. 1. ~ 9. 30.
- 지원비율 : 군비 5%, 자부담 95% (구매 금액의 5% 지원)
- 지원품목 : 종자·종묘, 농약, 농업용 필름,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자재, 멀칭필름, 제초매트

Ⅲ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 대상

가. 기본 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완주군 내에서 직접 농어업 활동을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농어가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거주 및 등록 요건

-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실거주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유지

다. 농어가 단위 판단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개 농어가로 판단하여 1건만 지원

2. 지원 제외대상

가. 소득 기준 초과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어업인

나. 세대 분리자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한 농어업인

다. 그 밖의 제외 사유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농가
- 신청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거나 지급 제한 기간 중인 자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라. 중복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필수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으로 지원을 받은 자

※ 친환경농업 육성·토양개량·시설개선 등 지원 목적이 다른 사업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구매 건(동일 영수증)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금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00만 원 이내

▷ 조례 제5조제1항의 “인상된 가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의 인상 금액을 말하며, 개별 농가·구매 건별로 전년 대비 상승분을 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 10%로 일괄 적용하여, 인상분의 50%인 5%를 보조금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 자부담 95% ※ 지원금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4. 구매업체(지정업체)

○ 지정업체 기준 : 관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취급하며, 세금계산서 등 정상 증빙 발행이 가능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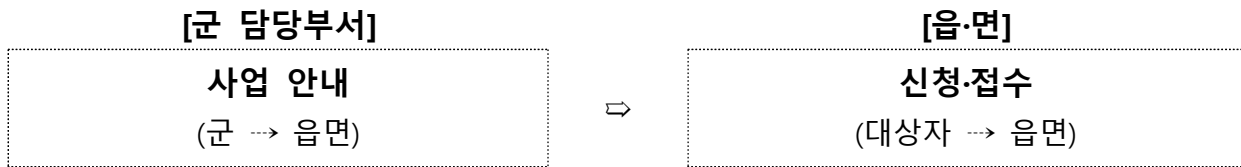
IV 추진 절차

1. 사업 표준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추진계획 수립 (‘26.8.)	▶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필수기자재 심의위원회 추진 (‘26.8.)	▶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필수사항 의결 (지원 대상 품목 및 지정업체 지정 등)
↓	
사업 신청·접수 (‘26.9.)	▶ 사업신청서 배부(각 읍면) ▶ 사업신청서 제출(대상자 → 농지소재 읍면)
↓	
지원요건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26.10.)	▶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읍면)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읍면 → 담당부서) ▶ 취합 및 검토(담당부서)
↓	
사업대상자 확정 (‘26.11.)	▶ 완주군 농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대상자별 구매 희망업체 확정(담당부서) ▶ 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농자재 구매 안내
↓	
사업대상자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26.11.~12.)	▶ 읍면별 대상자 농자재 판매처 구매내역 확인 및 완료보고서 제출 ※ 구매기한 : 2026. 11. 30. 한 ▶ 구매업체 또는 금액 변경시 변경신청서 추가 제출
↓	
사업정산 (‘27.1.~2.)	▶ 정산보고

2.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사업 신청 : 9. 1. ~ 9. 28.



○ 사업지침 시행 (담당부서)

- 읍면 및 관내 홈페이지 사업 추진 일정 공고 등 사업 안내

○ 신청서 비치·배부(읍면 행정복지센터)

- 농업인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 신청서 비치 및 배부

○ 신청서 작성(농업인)

- 신청자격 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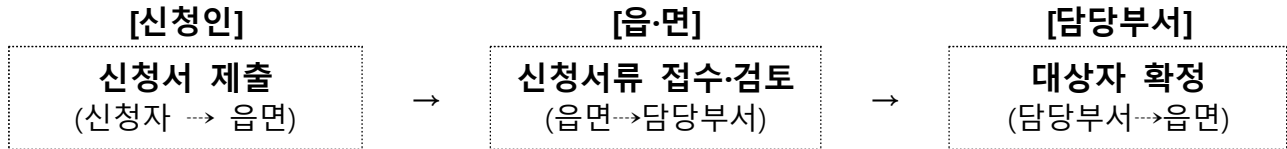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

- 신청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명)
- 제출장소 :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이력포함),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서에 배우자 정보 미기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 Agrix, 무인발급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나. 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토 후 제출 : ~ 10. 6. 한



○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읍·면장)

-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 ② 첨부서류 미비 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 조치
*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 ③ 신청연도 1월 1일기준, 거주 여부: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 ④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확인
- ⑤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여부 등
- ⑥ 읍·면 대상자 선정 결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제출

다. 지원대상 선정 : ~ 10. 16. 한

- 읍면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토대로 담당부서 검토 후 최종 대상자 확정

라. 구매업체 및 금액 변경시 : 11. 30. 한 (구매 전까지)

-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구매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 변경신청 : 농지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매 전 업체 및 금액 변경 가능 (구입 후 변경 불가)

3. 사업 정산

가. 정산서류 제출 : 12. 7. 한

- 제출 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보조금청구서, 사진대지, 납품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구매 업체 사업자등록증
- * 타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자재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정산 관리 철저

나. 부정수급 관리

○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사실상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
- 허위로 매출내역 작성 및 보조금 수령(공급업체 및 농업인 동시 제재)
 - * 실제 구입하지 않은 영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서류 작성
 - * 지정된 농자재로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농자재로 대처 구입
 - * 차기 년도 사용을 위한 외상거래 행위(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 및 감사 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전액	10년 범위 내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전액	5년 범위 내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 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 사업대상자가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관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환수

4. 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신청(민원인→읍면) : '26. 9. 1.~28.
- 신청서 접수 및 지원요건 검토 후 제출(읍면→담당부서) : '26. 10. 6. 한
- 지원대상 선정결과 알림(담당부서→읍면) : '26. 10. 16. 한
- 보조사업자 구매 및 변경신청 : '26. 11. 30. 한
- 완료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읍면→담당부서) : '26. 12. 7. 한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26. 12. 31. 한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안내문(안) 1부.
3. 사업포기서 1부.
4. 사업변경 신청서 1부.
5.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1부.
6.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서식) 1부.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1부.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연번]

2026 완주군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 -	
배 우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어업규모	(논) m ²	(밭/임야) m ²	(축산)	두수	(어업) m ²
지원품목	종자·종묘 / 농약 / 농업용 필름 / 부직포 / 보온덮개 / 차광자재 / 멀칭필름 / 제초매트				
구입 희망 품목	예시) 농약	예시) 종자,종묘	예시) 부직포		
수량	00병	00개(본)/00kg	00롤		
구 입 희망업체①			구 입 희망업체②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이력포함),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더불어 사업신청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향후, 부정수급, 타시군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필수기자재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 확인내용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주소 및 실거주 : 거 주 (), 미거주 ()					
■ 생산면적 확인 : 논 (m ²), 밭/임야 (m ²) 축산(두수) 어업(m ²)					
■ 지원대상 여부 : 여 (), 부 ()					
* 지원제외 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인 지원 사업 유효 기간 내(2026.1.1.~2026.12.31.)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완주군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1. 2026년 필수기자재 지원사업은 농자재 구매가격의 반값을 완주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2026년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9. 1. ~ 9. 30.**이며, 선정 후 **11. 30. 이전까지 구매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자 선정 이전에 구매하는 농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품목은 종자·종묘, 농약, 농업용 필름, 부직포, 보온 덮개, 차광자재, 멀칭필름, 제초매트입니다.
4. 농자재 구입은 신청서에 작성한 희망업체에서 지정 보조사업비 내로 지원 대상 품목 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보조사업비 이상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5. 보조금은 신청자 선 구매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 보조금은 100만 원**입니다.
6. 신청 농가는 아래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보조금 지급 후 지급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완주군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성명		연락처	010-	
	주소			생년월일	

☐ 사업계획 변경내역

- 변경사유 :
- 변경내역

구분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변경)	비고

상기와 같이 2026년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보조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완주군수 귀하

붙임 5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읍면 → 담당부서 제출)

☐ 신청내역 보고(엑셀)

(단위:천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번호	배우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경작규모(ha)			사업비(예상소요액)			희망업체1	희망업체2
												합계	논	밭	계	보조금	자부담	업체명	업체명
합계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2026 완주군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지원연도	'2026.~
사업비	▶ 총계: 00,000천 원 • 00년도: 000천 원(군 0000) • 00년도: 000천 원(군 0000)		
보조사업자(농가)			
업체명	00000	업체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000 천원(군 00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덮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거적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다겹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이탄(泥炭)·토탄(土炭)·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범씨밭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과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전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구동기류(驅動機類)·복합환경제어기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67. 농업용 지게차
68. 콩나물 재배용기
69. 콩나물 두절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5. 2. 28.>